

적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

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성면 단위 주민을 대표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모집기간 : 2026년 6월 9일(화) ~ 2026년 6월 22일(월) (18시까지 시간 엄수)

2. 접수장소 :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

3. 모집인원 : 7명 이내

4. 자격요건
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, **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한 사람 중 추천 선정**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.

- 적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-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적성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
- 적성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

- 적성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* 등에 속한 사람

※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* 기관·단체의 인정범위

구 분	범 위
기 관	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
단 체	· 직능단체 : 각 읍면동 지역의 공익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읍면동 주민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관, 회원명부, 회의록 등을 근거로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 있는 단체 · 공공단체 :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수행하는 법인단체

※ 그 밖의 단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모집완료 후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 예정

5. 위원의 임기 : 위촉일부터 2026.12.31.까지

6. 신청방법 : 적성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방문접수(평일 9시~18시)

또는 이메일 접수(rlaqkq23@korea.kr)

7. 제출서류 : 신청서, 추천서(단체추천), 개인정보처리 동의서, 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(아래 표 참조)

※ 신청서식은 접수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, 파주시 홈페이지 '고시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구분	자격에 따른 증빙서류
공통	1. 적성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▶ 주민등록초본(공고일 기준 주소 확인용) 2.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적성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▶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3. 적성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▶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4. 적성면 소재 각급 학교, 기관, 단체의 임·직원 ▶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
단체추천 모집분야	해당 지역 소재 학교, 기관, 단체*에 소속된 사람 ▶ 재직증명서 또는 현재 활동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※ '단체'의 경우 직능단체/공공단체 확인 서류 필요 ex) 정관, 회의록, 단체회원명부, 6개월 이상 활동 실적 증빙서류

8. 선정방법 : 신청자격(개인 및 단체분야)요건 적정 여부에 대해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수료자 중 공개추첨

위원신청(접수) ▶ 주민자치교육과정 6시간 이수 ▶ 공개추첨 ▶ 위원 선정

※ 공개추첨일 : 2026년 6월말(예정)/ 추첨일 별도 공지(누구나 참관 가능)

9. 주민자치 교육안내

▪ 위원 모집신청 후 파주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(6시간)을 사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위원 공개추첨 자격이 주어집니다.(미 이수 시 선정불가)

※ 경기도평생학습포털(<https://www.gseek.kr>)에서 이수 가능

10.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등
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원칙
-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의 의무 수행

11. 결과발표 : 공개추첨 후 개별통지, 파주시 홈페이지 및 적성면 게시판 게시

12. 기타사항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의거 개인별, 단체별 특정성별이 60% 이하가 되도록 추천합니다.
 - ※ 모집별 정원 미달 시도 특정 성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.
-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.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지원서 제출 당시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자격에 **해당했던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사업장 등을 그만두는 등 「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**를 통해 규정한 **지원 자격**에 해당 안 될 시 선정 제외

13. 문의사항 : 적성면 행정복지센터(☎ 031-940-8197)

2026년 6월 8일

파주시 적성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